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8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미화·윤준병·양문석
이연희·이정문·박홍배
박용갑·이용선·이학영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장기등의 이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1. 환자 본인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인 경우

2. 환자 본인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

3. 환자의 가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20조제6호 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략)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4항-----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생략)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의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장기등의 이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1. 환자 본인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인 경우

② ~ ④ (생략)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2. 환자 본인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인 경우

3. 환자의 가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

-----.

제20조(기록의 보존)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9조제5항-----

결과 7.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 7.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6항-----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